

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

민간위탁금의 정의 · 집행 범위 · 정산 승인 · 부과징수에 관한 조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방제운영비”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에서 운영하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「방제비용 부과·징수 규칙」 제2조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(이하 “방제조치 등”이라 한다)를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.
- “민간위탁금”이란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조치 등에 발생한 비용지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과 체결한 「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·수탁 협약서」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.

제4조(관리 및 감독)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공단, 방제업자 등이 제3조에 따른 방제조치 등을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, 해양경찰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**시정을 명령**할 수 있다.

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 사고로 방제조치 등을 수행시 공단, 방제업자 등으로부터 **매일 방제실적과 조치사항을 보고 받아 평가**한 후 해양오염사고 규모에 적합한 방제선박, 장비 등의 방제세력을 동원하도록 해야 한다.

제2장 방제운영비의 집행 (발체)

제6조(방제운영비의 집행항목) ②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제5조제6호에 따라 공단이 직접 방제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방제운영비의 집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**일반관리비(공단의 「방제조치규정」에 따라 비용청구 시 추가되는 총 청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)**는 정산하지 않는다.

- 선박 연료비
-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
- 소모된 물품(유흡착재, 유처리제, 유겔화제 등)
- 기계·기구·물품 등 운반·운송비
- 회수된 기름등폐기물의 운반·처리비

제12조(방제비용 정산) 공단 및 방제업자 등이 제5조제6호에 따라 방제조치 등을 한 후 방제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면 해양경찰서장은 **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** 방제운영비로 정산 조치한다.

제13조(방제운영비 관리) ① 해양경찰관서의 재무관 등은 방제운영비를 **다른 예산과 별도로 정리**하고, 이 규칙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④ 해양경찰서장은 공단 또는 방제업자 등의 방제비용을 정산할 경우에는 그 **세부 정산예정명세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**을 받아야 한다.

⑤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운영비 집행사항을 **매 분기 말 기준**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지

방해양경찰청장은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3장 민간위탁금의 집행

제14조(민간위탁금의 적용 범위) 민간위탁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방제비용을 정산하는데 사용한다.

1.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되어 방제조치 등을 실시한 경우
2. 해양경찰서장이 사회적 이슈, 다수민원 발생, 대규모 오염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5조(민간위탁금의 집행절차)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**사전에 보고**해야 한다.

② 민간위탁금 집행을 위한 세부절차는 공단과 체결한 「**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·수탁 협약서**」에서 정한다.

제16조(민간위탁금 정산 승인) ① 공단 또는 방제업자 등이 제15조에 따라 방제비용의 정산을 요청하면 해양경찰서장은 비용의 산출근거를 제출받아 「방제비용 부과·징수 규칙」 제9조에 따라 **방제비용산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**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해야 한다.

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**그 결과를 보고**해야 한다.

제17조(민간위탁금 방제비용의 부과징수)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「방제비용 부과·징수 규칙」에 따라 **방제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을 징수하여 국고에 수입조치** 해야 한다. 다만,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방제비용을 방제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, **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**한다.

제18조(재검토 기한)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**매 3년이 되는 시점**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칙

부칙 <제125호, 2025. 4. 16.>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종전 연혁: 제1호(2017. 7. 26.) · 제10호(2017. 10. 20.) · 제32호(2018. 12. 20.) · 제63호(2020. 10. 22.)

※ 이 문서는 예규 본문 중 민간위탁금 관련 조문의 발체임. 별지 서식과 제3조·제5조·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생략함.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음.